

사단법인 만해사상실천연합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만해사상실천연합”(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 명칭은 “The Union for the Practice of Manhae Thought” (약칭 UPMT)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만해 한용운 선사의 민족정신과 자유·평화·생명 사상을 계승하여 민족의 평화 통일과 한국문학의 발전, 그리고 도덕적 정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만해 탄신일 기념 만해평화문학축전 사업
- 심우장 성역화 및 확장 지원 사업
- 만해사상과 문학의 연구 및 만해 백일장 사업
- 만해실천상 제정 및 시상 사업
- 남북 문인간 통일문학 교류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 예술 관련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 사 5인 이상 9인 이내 (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
3. 감 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 또는 결위되었을 때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상임이사가 결위되었을 때에는 연장자 이사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상임이사)

-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1인을 둔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②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1조(회계연도와 예산편성)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2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회계의 공개)

-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4월 말까지 본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운영기구 및 사무국

제36조(운영기구)

- ① 본 연합의 운영과 조직 확대를 위해 법인이사회 산하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총재 1인
 2. 의장 1인
 3. 부의장 5인 내외
 4. 고문 약간 명
 5. 자문위원 약간 명
 6. 운영이사 20명 내외
 7. 일반이사 100명 내외
- ② 총재는 상징적 직위로서 총회와 이사회의 자문역을 맡으며, 의장은 참여단체 협의회를 주재한다.
- ③ 36조 ①항의 운영기구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7조(운영이사회)

- ① 본회는 법인이사회 산하에 업무의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이사회를 둔다.
- ② 운영이사는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 ③ 운영이사회 구성과 담당이사에게 주어지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이사 : 전반적인 사업 기획에 관한 일

2. 총무이사 : 전반적인 운영.서무.경리.행사에 관한 일
3. 연구이사 : 학술연구 및 발표에 관한 일
4. 편집이사 : 행사 자료 및 출판물의 편집 및 배본에 관한 일
5. 정보화이사 : 전산.정보화에 관한 일
6. 재정이사 : 기금모금 및 발전사업에 관한 일
7. 홍보이사: 홍보와 대외 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일
8. 조직이사 : 조직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일
9. 국제이사: 국제 유관 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일

제38조(연구소 및 사업기구)

- ① 본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소 및 필요한 사업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소의 설치와 사업기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사무국)

-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다음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총장 1인
 2. 사무국장1인
 3. 간사 약간 명
- ③ 사무총장 및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기
이사장	이무웅(홍파)		이하 정보는 개인신상으로 생략	4년
이사	김용표			4년
이사	김재엽			4년
이사	홍영춘			4년
이사	황진수			4년
이사	백원기			4년
감사	김형균			2년
감사	김태진			2년

제4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2년 4월 1일 사단법인만해사상실천연합

서울시 종로구 종로63가 길 31(송인동) 이사장 이무웅

성 명	주 소	날 인
이무웅(홍파)		
김용표		
김재엽		
홍영춘		
황진수		
백원기		